

PART 1

# 철충교역 제도

# I 절충교역 개요

## 1. 절충교역 제도 안내

### ☞ 절충교역 정의(방위사업법 제3조)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 WTO 정부조달협정

- 정부조달에 있어 국내의 공급자간 차별 및 절충교역 부과금지 원칙(제4조)
- 자유무역 원칙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위협요소로 인식
- 단, 국가안보 목적의 조달에 대해서는 절충교역 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제3조)

### ☞ 추진근거

- 방위사업법**
  - 절충교역 적용대상 사업(제20조 제1항)
    -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 (추진 원칙)
- 방위사업법**
  - 절충교역 추진시 충족 조건(제20조 제3항)
    - 방위력 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군수지원 능력 확보
    - 무기체계 개발 및 생산 참여, 방산물자 등 군수품 수출
    - 무기체계 정비물량 확보,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수출 등
-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절충교역 대상 금액(제26조 제1항)
    - 국외로부터 1천만달러 이상의 군수품을 구매하는 단위사업

## ☞ 절충교역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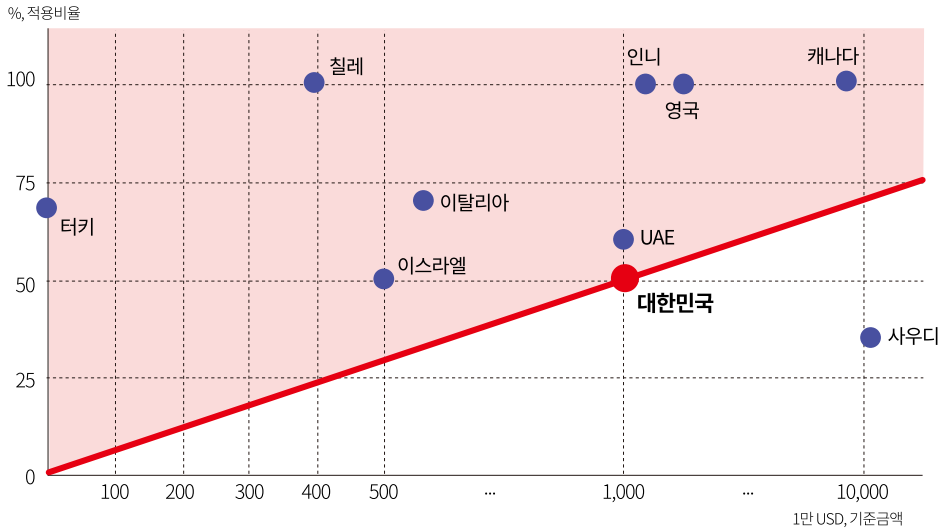
- 절충교역은 2차대전 후 미국이 서독 주둔 미군의 비용을 ‘상쇄(offset)’하기 위해 서독군에게 미국산 무기의 구매를 요구한 것에서 비롯
- 이후 서유럽의 NATO 회원국들이 미국의 무기를 구매할 때 바터무역 형태로 기술이전 등 절충교역(Offset Trade) 요구
-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20여개국에서 무기구매의 보편적 제도로 정착
- 우리나라는 1983년 국방부에서 정책으로 채택하여 제도화

## ☞ 절충교역 제도 변화

- 1982년 각 군별 시행, 1983년 본격 제도 시행 ·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 목적

연대별	수행조직	정책목표	적용기준	적용비율
1980년대	각 군 주관 (1982~1984)	국내상품의 국외수출 (1983~1986)	대규모 사업 (1983~1984)	계약금액의 50% 이상 (1983~1987)
	국방부 방위산업국 통합수행(1984~1985)		100만\$ 이상 (1985~1988)	미국 : 30% 이상 기타 : 50% 이상 (1988)
1990년대	정책과 집행 이원화 정책 : 국방부 집행 : 조달본부 (1986~2005)	정부권장품목 수출과 하청생산(1987~1990)	200만\$ 이상 (1989~1991)	계약금액의 30% 이상 (1989~2009)
			500만\$ 이상 (1992~1996)	
2000년대	방위사업청 (2006~현재)	핵심기술의 획득, 부품제작 수출, 군수지원요소 획득 (2000~현재)	1000만\$ 이상 (1997~현재)	경쟁시 50% 이상 비경쟁시 30% 이상 (2009~2011)
				경쟁시 50% 이상 비경쟁시 10% 이상 (2012~현재)

## 주요국의 절충교역 대상금액 및 적용비율



## 절충교역 종류

### ■ 구매 무기체계 · 장비와의 관련성에 따른 구분 : 직접/간접

- 직접절충교역 : 획득하고자 하는 장비 또는 물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이전, 부품제작 및 수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절충교역
  - \* F-15K(2차) 기체 절충교역에서 F-15K의 구성품인 전방시현기의 제작 수출
- 간접절충교역 : 획득하고자 하는 장비 또는 물자와 직접 관련 없는 기술을 이전받거나 부품을 수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절충교역
  - \* F-15K(2차) 기체 절충교역에서 A-10(전투기 일종) 날개의 제작 수출

### ■ 수혜분야에 따른 구분 : 군수/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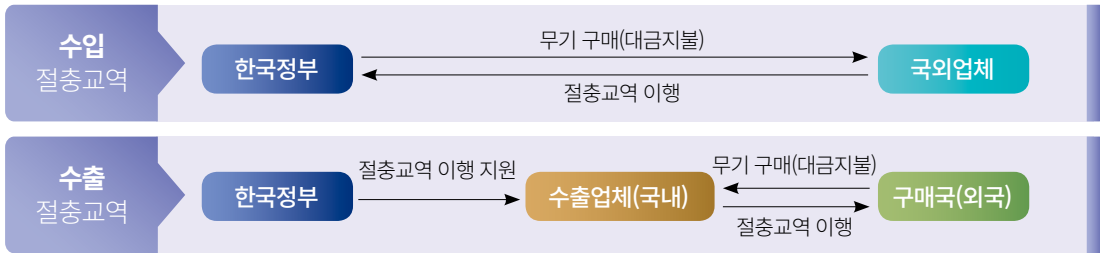
군수분야  
절충교역

무기체계 개발기술, 부품제작 참여, 군수지원, 군수품 수출 등

민수분야  
절충교역

민수제품 수출, 산업협력, 금융지원 등

■ 수입/수출에 따른 구분 : 수입/수출



☞ 절충교역 적용비율

- 경쟁여건이 형성된 경우 : 기본계약예상금액의 **50%** 이상
- 경쟁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 기본계약예상금액의 **10%** 이상

☞ 절충교역 가능분야

- 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 능력의 확보
  - 계약상대국에서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에의 참여
  -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 계약상대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물량**의 확보
  - 군수품 외의 물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한 물자의 연계 수출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
- ※ 6), 7)의 경우, 1)~5)의 어느 하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

☞ 절충교역 참여유형

- 부품 제작 및 수출 물량, 국외업체 정비물량
- 기술자료(기술문서, 도면, Source Code 등), 기술지원(국외교육, 국내교육)
- 기술료(노하우), 외국인 투자 등

## ☞ 절충교역 가능 주요 사업 및 분야

### ■ 공군 관련 무기체계 구매사업



### ■ 해군 관련 무기체계 구매사업



## ☞ 절충교역 수행절차



※   IPT 주관 업무      절충교역과 주관 업무

## 2. 절충교역 참여 안내



### 국방분야 절충교역 참여 절차



### 국방분야 협상방안 종합/제출 기관 및 연락처

- ▶ 한국방위사업진흥회(방진회) 수출지원팀 ☎ 02-3270-6083~4
- ▶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국방벤처실 ☎ 055-751-5197



## ☞ 민수분야 절충교역 참여 절차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 (참여가능 분야) 민군겸용, 항공, 로봇, 전자, 국책 R&D 사업관련 등

\* 상기 외, 국가미래성장동력사업 관련 품목, 경제적인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우수품목 포함

### ■ (신청자격) 상기 품목추천과 관련 업체 및 연구소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중소, 중견, 대기업, 연구소 지원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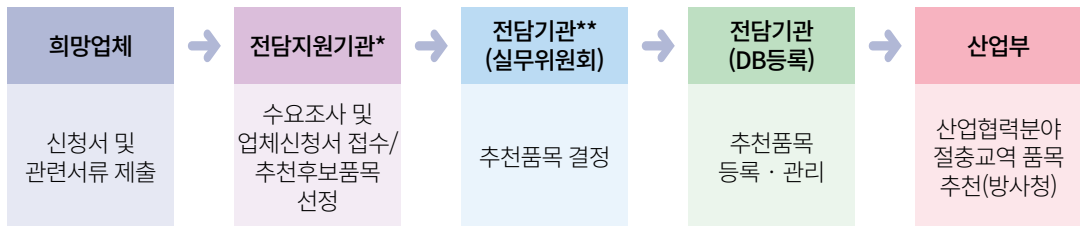
- |  |                   |
|--|-------------------|
| 1.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기관                   |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관 |
| 3.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 |                   |
| 4.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관                       |                   |

### ■ (신청방법) 상·하반기 수요조사 공고 시, 분야별 전담지원기관으로 제출

- 現 하반기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수요조사 공고(10. 7~11. 8)

### ■ (지원내용) 선정품목은 산업부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 품목으로 관리하고, 절충교역 대상 국외업체 홍보 및 수출상담회 참여기회 제공

### ■ (참여절차)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민군협력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4개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민수분야(산업부) 절충교역 참여 문의처

- |                            |                 |
|----------------------------|-----------------|
| ▶ 사업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 ☎ 044-203-4319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 ☎ 02-6009-3512  |
| ▶ 전담지원기관(동일품목 중복신청 불가)     |                 |
| • 항공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 02-786-3951   |
| • 민군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 ☎ 042-607-6026  |
| • 로봇 : 한국로봇산업협회            | ☎ 070-7777-2550 |
| • 전자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 02-6388-6180  |

## ☞ 민수분야 절충교역 참여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 **(참여가능 분야)** 우수 중소기업 제품(군수품 외 물자)의 연계 수출
- **(신청자격)**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11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국내 생산 활동이 50% 이상이며,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 **(신청방법)** 온라인(www.exportcenter.go.kr) 기업회원가입 후 신청
- **(지원내용)**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3년간 절충교역 전용 홈페이지(offset.gobizkorea.com)에 관련정보 게시
- **(참여절차)** 세부사항 아래표 참조

추진절차	관련기관	세부내용
참여희망 기업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li> <li>▪ 연중 수시 신청</li> </ul>
↓		
현장평가(분기별)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업 서류/현장평가 실시</li> </ul>
↓		
추진분야 품목 검토/ 추진업체 선정	실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 심의</li> </ul>
↓		
자료 접수 및 사이트 등록	중소기업진흥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업체 및 제품정보를 수집하여 사이트 (offset.gobizkorea.com)에 등록</li> </ul>

### 민수분야(중기부) 절충교역 참여 문의처

- ▶ 사업총괄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해외진출지원담당관 ☎ 042-481-4355
- ▶ 관리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사업처 ☎ 055-751-9797
- ▶ 현장평가 :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 전산신청 장애문의 ☎ 055-756-7902

### 3. 절충교역 정책방향 및 제도운영



#### ☞ 절충교역 정책방향



#### ① 절충교역을 통한 방산수출 확대 추진

- 핵심기술 보호 및 이전 기피로 기술도입을 통한 성과 창출 한계
- 수출증대,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적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

#### ② 방산 중소기업 참여확대 추진

- 방산 부품·소재 공급원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충교역 활용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동반 성장으로 방산 경쟁력 강화

##### ◆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 **(가치승수 확대)** 절충교역을 통한 중소기업의 방산수출 지원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물량에 대·중견기업 대비 2배의 가치승수 부여(2018.12월)

구분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직접 절충교역	1.5	2→3
간접 절충교역	1	1.5→2

- **(사전 가치축적 제도 도입)** 충분한 협상기간을 확보하여 국외 선진업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및 핵심부품의 제작·수출 기회 확대(2018.12월)

\* 기본사업과 무관한 절충교역 추진으로 절충교역으로 인한 기본사업 일정 지연, 기본계약금 상승 우려 등의 부작용 방지

##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운영

### ① 중소기업-국외업체간 상호 연계를 위한 수출상담회 운영

- 국외업체 구매 담당자와 국내 방산업체가 1:1로 상담하는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개최 (개최 실적 : 2014~2018년간 총 10회 개최)
- \* 상담회 계획은 방사청 · 산업부 · 중기부 및 방진회 등의 기관 홈페이지에 수시 공지(매년 1~2회 실시)

#### ◆ 수출상담회 주요 사례 ◆

##### ▶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수출상담회

- 일시 / 장소 : 2017. 11. 8(화)~10(목) / 서울(쉐라톤 남산호텔, 서울스퀘어)
- 내용 : 국내외 기업간 1:1 면담 및 Supply-Chain 참여 방법 / 기준 설명
- 참석 : 3개 국외기업 및 국내기업 41개사, 방진회, 산업부, 중기청 등

##### ▶ F-35A 사업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 일시 / 장소 : 2018. 11. 28(수)~30(금) / 부산(해운대 그랜드호텔, 벅스코)
- 내용 : 국내외 기업간 1:1 면담 및 Supply-Chain 참여 방법 / 기준 설명
- 참석 : 6개 국외기업 및 67개 국내 중소기업, 중기부, 방진회 등



##### ▶ Airbus사 대상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 일시 / 장소 : 2019. 7. 16(화) / 용산역 회의실
- 내용 : Airbus사 수출상담 진행, 참석업체 대상 1:1 컨설팅
- 참석 : Airbus, 국내 14개 업체



## ② 컨설팅 온라인 접수창구 설치 운영

### ■ (설치) 방사청 홈페이지 배너존에 컨설팅 신청메뉴 설치 · 운영

※ 컨설팅 신청방법 개선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신청방법	대면	온라인, 우편, 방문
홍보방법	오프라인 행사 등에서 불규칙적 홍보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병행 (기품원, 방진회, 산업부, 중기부 등)
신청양식	양식 없음	규격양식 사용
사후관리	별도기준 없음	지속적 업체현황 모니터링(반기별)

### ■ (운영) 유선상담을 통하여 신청업체의 절충교역 이해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후 현장방문 맞춤형 컨설팅 실시

- \* ① 절충교역 참여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업체
- ② 절충교역 참여 과정에서 실제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

- 컨설팅은 절충교역과 직원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부서 담당자, 기품원(절충교역과) 담당자 등 동행

### ◆ 업무처리 절차 ◆

구분	내용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li> <li>*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 : 배너클릭 → 팝업창 확인 →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신고서 작성 → 제출[이메일(offsetconsulting@korea.kr), 우편, 방문]</li> </ul>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담당자) 신청내용 확인 및 유선 상담</li> <li>* 신청업체의 특성에 맞는 컨설팅 담당자 지정</li> </ul>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유형) 절충교역과 컨설팅 담당자 현장방문 컨설팅</li> <li>• (②유형) 관련 국외업체 담당자 현장방문 컨설팅</li> <li>* 필요시 청 사업부서, 기품원 절충교역과 동행</li> </ul>

\* ①유형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권역별 절충교역 설명회 개최

### ③ 중소기업 주요 절충교역 참여 사례

#### ■ 장보고- I PIP(공격잠망경) 사업

- 국외업체 : 독) Airbus DS Optronics
- 중소기업 참여 : 약 100만불
- 그린광학 : 광학부품 제작 및 정밀가공

#### ■ 기상레이더 2차 사업

- 국외업체 : 핀) Vaisala
- 중소기업 참여 : 약 330만불
- RFHIC : 레이더 송수신 케비넷 제작
- 기가레인 : 레이더 페데스탈 제작



#### ■ 장보고-III 전자광학체계 사업

- 국외업체 : 프) SAFRAN(SAGEM)
- 중소기업 참여 : 약 650만불
- 연합정밀 : 닥루프 특수케이블 제작
- 이오시스템 : 광학부품 가공 및 조립 등



#### ■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사업

- 국외업체 : 미) L-3 Com ALST
- 중소기업 참여 : 약 1,200만불
- 코리아일레콤 : 전자부품류 등 제작
- 빅슨, CNB 등 : 절충교역 추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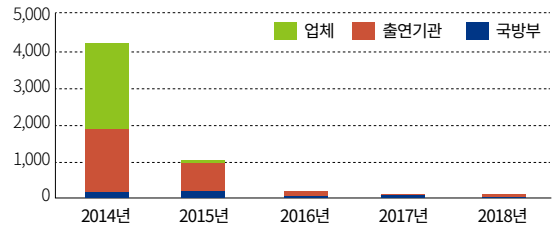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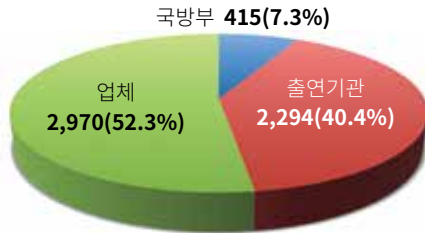


## 4. 질충교역 관련 통계자료 (2019년도 방위사업 통계연보 中)

### 최근 5년간 연도별, 참여기관별 확보가치 현황(2014~2018)

연도별, 참여기관별 확보가치 현황

(단위: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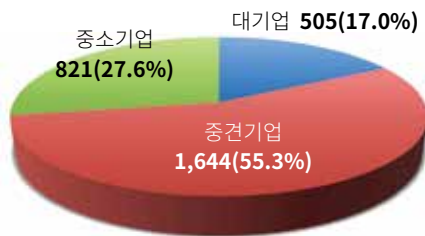


구분 연도	국방부 (육, 해, 공군 등)	비율	출연기관 (국과연, 기품원 등)	비율	업체	비율
2014년	134.9	3.2%	2,226.8	52.8%	1,859.6	44.1%
2015년	173.5	16.5%	56.9	5.4%	820.5	78.1%
2016년	37.0	18.6%	3.5	1.8%	158.1	79.6%
2017년	58.5	63.0%	0	0.0%	34.4	37.0%
2018년	10.9	9.5%	6.5	5.6%	97.7	84.9%
계	414.8	7.3%	2,293.7	40.4%	2,970.3	52.3%

### 최근 5년간 국내업체 규모별 확보가치 현황(201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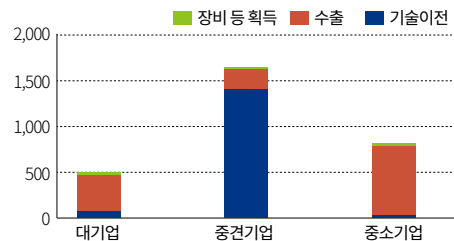
국내업체 규모별 확보가치 현황

(단위: 백만\$)



국내업체 규모별 확보유형 현황

(단위: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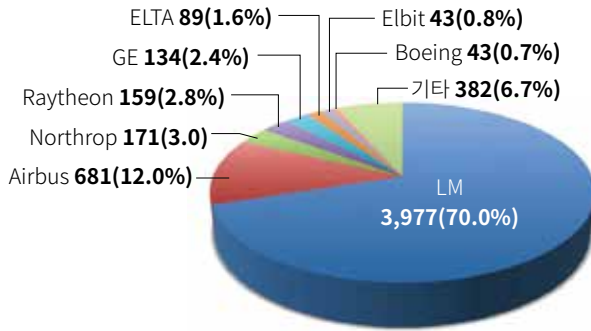
연도별, 국내업체 규모별 확보가치 현황

(단위: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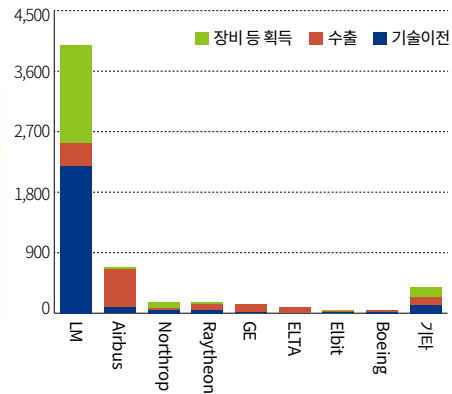
구분 업체	기술이전	비율	부품제작 및 수출	비율	장비 등 획득	비율	계	비율
대기업	73.5	14.5%	399.3	79.0%	32.6	6.5%	505.4	17.0%
중견기업	1,408.5	85.7%	219.8	13.4%	15.6	0.9%	1,643.9	55.3%
중소기업	25.5	3.1%	755.3	92.0%	40.1	4.9%	820.9	27.6%
계	1,507.5	50.7%	1,374.4	46.3%	88.3	3.0%	2,970.2	100.0%

## 최근 5년간 국외업체 유형별 확보가치 현황(2014~2018)

■ 업체별 절충교역 확보가치 현황 (단위: 백만\$, %)



■ 업체별 유형별 확보가치 현황 (단위: 백만\$)



■ 국외 유형별 확보가치 현황

(단위: 건,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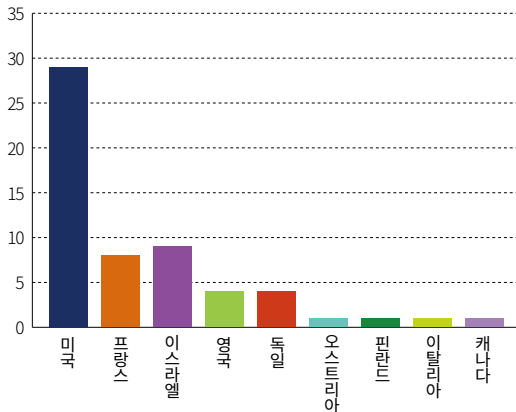
구 분		기술이전	수출	장비 등 획득	계	가치비율
국외업체	사업수					
LM	2	2,191.4	338.2	1,447.7	3,977.3	70.0%
Airbus	4	87.9	559.3	33.9	681.2	12.0%
Northrop	1	46.7	20.3	104.4	171.3	3.0%
Raytheon	7	47.5	83.0	28.3	158.8	2.8%
GE	1	6.2	127.9	0	134.0	2.4%
ELTA	2	0	85.4	3.0	88.5	1.6%
Elbit	3	8.9	20.3	14.3	43.4	0.8%
Boeing	4	16.6	25.3	0.6	42.5	0.7%
기타	34	120.3	114.7	146.8	381.8	6.7%
계	58	2,525.4	1,374.4	1,779.0	5,678.8	100.0%



## 최근 5년간 국가별 확보가치 현황(201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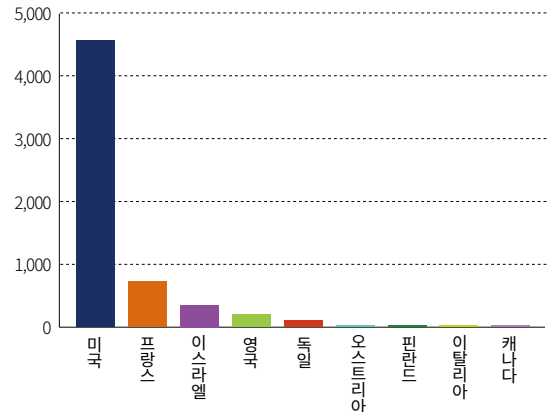
■ 국가별 절충교역 사업수

(단위 : 건)



■ 국가별 절충교역 확보가치 현황

(단위 : 백만\$)



■ 국가별 확보가치 현황

(단위 : 건, 백만\$)

국 가	구 분	사업 수	사업수 비율	가 치	가치비율
미국		29	50.0%	4,569.9	80.5%
프랑스		8	13.8%	726.8	12.8%
이스라엘		9	15.5%	236.5	4.2%
영국		4	6.9%	76.0	1.3%
독일		4	6.9%	37.8	0.7%
오스트리아		1	1.7%	9.0	0.2%
핀란드		1	1.7%	8.4	0.1%
이탈리아		1	1.7%	7.5	0.1%
캐나다		1	1.7%	7.0	0.1%
계		58	100.0%	5,678.8	100.0%

## II 가치추적(Banking) 제도 안내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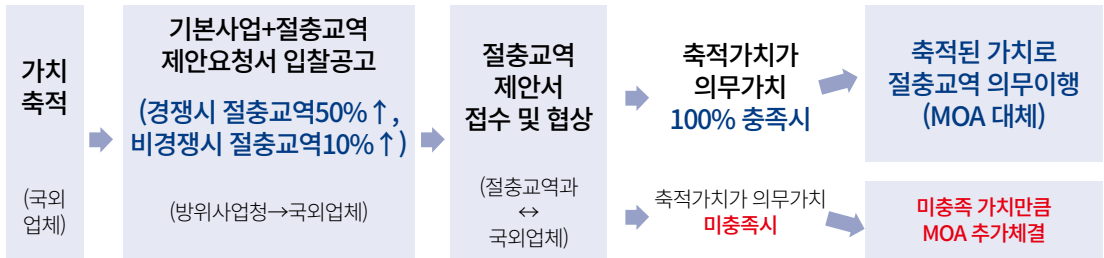
#### 정의 및 필요성

- (정의) 무기체계 판매 업체가 **기본사업과 관계없이** 구매국에 대한 **절충교역 의무를 미리 충족시키는 활동**
  - \* 국외업체에서 사전에 절충교역 가치를 추적하였을 경우 추후 기본사업 수주시 발생하는 절충교역 의무를 추적된 가치로 이행할 수 있어 **절충교역 이행에 용이**
- (필요성) 국외업체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프로젝트의 발굴이 가능하며** 국내업체의 경우 국외 선진업체와의 **중장기적으로 공동 기술개발 및 핵심부품의 제작·수출 기회 확대 가능**
  - \* 기본사업과 무관한 절충교역 추진으로 절충교역으로 인한 기본사업 일정 지연, 기본계약금 상승 우려 등의 부작용을 방지

#### 가치추적 인정대상

- ① 무기체계의 부품제작 및 수출
- ② 민·군 겸용 핵심부품의 공동개발 및 후속생산
- ③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이전
- ④ 군수품의 수출
- ⑤ 군수분야 정비물량 확보
- ⑥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민수분야의 산업협력(단, 새로운 사업에 한함)**
  - \* 새로운 사업이란 국외업체가 국내업체에게 새로운 산업용품이나 기술서비스 등을 처음 주문하거나, 지난 5년간 거래하지 않았던 산업용품이나 기술서비스 등을 다시 주문하는 것을 말함
- ⑦ 외국인 투자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 중 방위사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국외업체 단독 또는 국내업체와 합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

## ☞ 축적된 가치의 활용절차



## 2. 가치축적 절차

단계	주관	주요 내용
① 국외업체로부터 가치축적 제안접수	절충교역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수) 방산육성·방산수출 증대, 국외업체와의 핵심부품 공동개발 및 생산을 통한 <b>중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에 중점</b></li> <li>(민수)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항공, 로봇, IT, 첨단소재 등에 한정 등</li> </ul>
② 국외업체 제안내용 검토 및 승인	절충교역과, 산업부·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수) 절충교역과에서 검토</li> <li>(민수) 산업부 및 중기부에서 검토</li> </ul>
	절충교역 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외업체에서 가치축적 신청품목이 타당할 경우 조건협상 등 실시</li> <li><b>가치축적 합의서(Banking Agreement) 심의·의결</b></li> </ul>
③ 국외업체 가치축적 이행 모니터링	국내·외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국내참여기관-국외업체 간 계약서 등 체결</b></li> </ul>
	절충교역과, 산업부·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외업체의 합의내용 진행상황, 연도별 이행 계획 등을 모니터링</li> <li>민수분야는 산업부·중기부에서 모니터링 병행</li> </ul>
④ 사전 가치인정	국외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年 1회(1월) 이행계획서 제출</b></li> <li>가치축적 이행실적 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li> <li>가치가 축적된 날로부터 <b>5~7년 이내에서 제한 없이 활용 가능</b> (군수 7년, 민수 5년)</li> <li>* 군수분야 축적가치는 제3자에게 양도 가능</li> </ul>
	기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국외업체 실적에 대해 사후 가치평가</b></li> <li>* 국외업체 요청 시 사전 가치평가 가능</li> </ul>
	절충교역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단위 프로젝트 종료시 가치축적 승인</b></li> <li>* 단, 국외업체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 이행 기간 중 실적 발생 시 반기별 승인 가능</li> <li>민수분야는 산업부·중기부에서 최종 확인 후 <b>절충교역과에 승인 의뢰</b></li> <li>국외업체별 <b>가치축적 계좌관리</b></li> </ul>

### 3. 가치추적관련 국내업체 주요 확인사항



- “가치추적”은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의무를 미리 이행하는 것이므로 “가치추적으로 인정되는 대상품목”으로의 타당성 여부는 절충교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되며,

\* 미인정 기준

- ①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거래가 진행 중인 품목
- ② 기본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 ③ 외국인 투자의 경우 국내에 이미 외국인 투자신고가 된 사항

- 가치추적 대상으로의 인정여부는 국외업체와 국내업체간 중·장기적 협력관계 구축 등의 제도 도입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아래사항\*\*도 함께 고려하여 검토됨

\*\* 가치추적 미인정 대상

- ① 기존 가치추적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 ② 단순 기술의 제공
- ③ 일반적으로 구매 가능한 민수용 소프트웨어의 제공
- ④ 중장기적 협력관계가 아닌 단기계약을 통한 단순 부품제작·수출
- ⑤ 단독 민수부품의 개발이나 OEM 생산 (민군겸용 핵심부품은 가능)
- ⑥ 방위산업경쟁력 향상과 무관한 민수물자 또는 서비스의 구매
- ⑦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 \* 국제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⑧ 그 외 가치추적 제도의 도입취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사항



## 4. 합의각서(MOA) vs. 가치축적 합의서(Banking Agreement) 비교

❖ 가치축적 합의서는 체결하되, 국외업체에 대한 이행보증금 未설정 및 페널티 부과 면제, 행정소요 간소화 등의 유인책을 통해 가치축적 활성화 유인

구분	절충교역 합의각서(MOA)	가치축적 합의서(BA)
국외업체 제안시기	제안요청서(기본사업+절충교역) 발송 후	자유롭게 제안가능
이행보증금	절충교역 합의가치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설정 * 현금예치, 보증증권, 은행보증 형태	없음
이행기간	기본사업 기간과 동일	제한 없음
기술·장비 등 소유권	한국정부	국내참여기관 또는 국외업체 등 협상결과에 따름
페널티	(국외업체 귀책으로 합의내용 변경시) 변경되는 가치의 10% 증가 (국외업체 귀책으로 이행기간 연장시) (연장시점의 잔여가치)×(연장일 수)×0.15% 증가	없음
불이행 페널티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에서 미이행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몰수	폐지예정
기본사업제안서 평가시	가점 : 없음 감점 : 불성실 이행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	폐지예정
이행관리	연간 이행계획서 및 분기별 이행실적(증빙서류 포함) 보고서 제출	연간 이행계획서 보고서 제출
이행실적 승인	분기·반기별 이행실적 승인	단위 프로젝트 종료 후 승인 단, 국내업체 수출 실적 확인 가능시 반기별 이행실적 승인가능
합의내용의 사전이행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붙임 1

# 가치축적 제도 소개 자료 및 관련 홍보자료 송부 공문

깨끗한 무기가 強軍을 만들고, 강한 군대가 平和를 낳는다



## 방 위 사 업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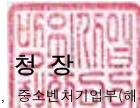
제목 『가치축적(Banking) 제도』 소개 자료 및 관련 홍보자료 송부

1. 귀 社(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절충교역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472호, 2018.12.17.)
  - 나. 국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4호, 2019.02.12.)
  -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84, 2018.09.18.)
3.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업체의 획기적인 수출지원을 위하여 2018.12.17.일자로 『가치축적(Banking)』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4. 이러한 『가치축적 제도』는 **해외업체가 국내업체와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제작 및 수출, 공동개발 등)을 축적해 왔다가 향후 수주한 방위사업 등에 절충교역 의무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5. **절충교역(가치축적)의 잠재적 수혜기관인 국내업체가 국외업체를 대상으로 제품판매 및 투자유치 유도 등을 위해 『가치축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가치축적 제도 소개자료 및 방위사업청장 명의 서한을 송부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치축적 제도 소개 자료.

2. 가치축적 제도 적극 활용 요청 서한(방위사업청장 명의). 끝.

### 방 위 사 업 청 장



수신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산업통장자원부(기계로봇과장), 중소벤처기업부(해외진출지원담당관), 국방기술품질원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경제통상협력본부장), 국내업체 대표이사, 사천시(우주항공과장), 창원시(경제살리기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투자유치담당, 투자유치과장, 미래전략산업추진담당)

육군소령 이경화 과장 전결 2019. 10. 2. 김세환

협조자

시행 절충교역과-4622 (2019. 10. 2.) 접수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http://www.dapa.go.kr

전화번호 02-2079-6355 팩스번호 02-773-7587 / kyunghwalee@korea.kr / 부분공개(5)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가치축적 제도 적극활용 요청 서한(방위사업청장 명의)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3809, 정부과천청사  
47, Gwanmun-ro, Gwacheon-si,  
Gyeonggi-do, 13809, Republic of KOREA

국외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To whom it may concern

방위사업청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평소 방위사업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신 귀 社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절충교역 “가치축적” 제도를 다시 한 번 더 소개/홍보해 드리고자 합니다.

This is the Minist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appreciation to your company for the close cooperation shown in support of the ROK security and hope to promote the ROK offset “Banking Policy”.

우선, 가치축적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귀 社뿐만 아니라 국내업체 및 방위사업청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nce again, the Banking Policy and its active use will not only support your company in your offset efforts, but also provide benefits to the domestic industry, DAPA and all involved parties.

방위사업청은 기존 절충교역의 시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외의 무기체계 판매업체가 방위사업청의 무기구매 사업과 관계없이 절충교역 이행의무를 미리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치축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In an effort to overcome time constraints that hindered the existing offset system, DAPA adopted the “Banking Policy” which will enable the foreign weapon system manufacturer to perform offsets in advance without any bearings to the DAPA weapon acquisition program.

가치축적 제도란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 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찾아서 쓰는 것처럼, 국외업체가 국내업체와 평소 협력한 실적(부품제작·수출, 공동개발 등)을 축적해두었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의무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Like depositing funds in a bank for future use, the newly adopted policy will enable the foreign contractor to accumulate cooperation results(parts manufacturing & export, joint development and etc.) with the KIP and freely utilize the accrued credits in future programs.

귀 社가 사전에 절충교역 가치를 축적하였을 경우 추후 무기구매 사업에의 참여 시 “절충교역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귀 社의 노고는 한층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t is expected that banked credits will significantly reduce the efforts required in identifying “offset projects” during future main program participation.

방위사업청은 가치축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외업체와 가치축적 합의서 체결 시 이행보증금 설정을 면제하고 패널티 미부과 조건을 반영하였으며,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과의 수출분야 협력 시 최대 3배까지 가치승수를 확대하여 인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APA exempted the performance bond requirement and the penalty in the case of Banking in order to promote its active usage and is also pursuing policy measures which will provide a maximum three(3) times multiplier in the case of exports from a domestic SME.

방위사업청은 귀 社가 가치축적 제도를 활용하여 “절충교역 의무이행”과 함께 대한민국 기업과의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므로 귀사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I ask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interest so that your company may utilize the Banking Policy in not only “fulfilling offset obligations”, but also **establishing a long-lasting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domestic participants.**

다시 한 번 귀 社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방위사업청과 귀 社간 호혜적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I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support and hope that our two organizations may be able to further our partnership in the coming future. Thank you.

xxxx . xxxx . 138 . 163 / 절충교역과 / 김세환(ksh19) / 2019-10-02 09:32:26

방위사업청

왕정홍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장  
왕정홍

Minister,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Jung-Hong Wang**

2019. 10. 2.

## III 2020년 이후 절충교역 제도

### 1. 주요 변경 사항

#### ☞ 절충교역 명칭 변경 ⇒ ‘절충교역’에서 ‘산업협력’으로

- 공동개발, 공동생산, 합작투자 등을 통한 방산수출 확대 정책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산업협력\*’으로 변경

\* 영문명 : Industry Cooperation

#### ☞ 산업협력 쿼터제 도입

- 무기체계 해외구매 시 도입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비율을 국산부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산업협력 쿼터제 도입
  - 선행연구 단계부터 국내 기술성숙도, 방위산업 육성효과 등을 기초로 참여 가능한 업체, 국산부품 쿼터비율 등을 조사·분석

### 2. 절충교역 제도개선(예정) 주요 내용

#### ☞ 청 절충교역 협상력 강화

- 국내에 경쟁력 있는 유망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목록(유망 강소기업 절충교역 협상방안)’을 기존 협상방안과 별도로 구축·관리하여 국외업체와 협상 시 최우선적으로 추진
- 국외업체로 하여금 청 협상방안을 우선 선택하게 하고, 추가 제안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 ☞ 공동개발 컨소시엄 활성화 및 상생협력의무 강화

- 공동연구·개발 및 합작투자 분야의 컨소시엄을 활성화하고 대·중견기업의 수출 분야 절충교역 참여 시 상생협력 의무 강화

### ☞ 절충교역 인정 대상품목 기준 명확화

- 제안서 검토 시 새로운 사업 여부와 특수관계인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기준 추가

### ☞ 중소기업 군수 관련 수출 시 가치승수 통일

- 중소기업의 군수 분야 수출(부품 제작 및 수출, 군수품 수출, 외국 정비물량 확보)에 대한 가치승수 3배로 동일하게 인정

### ☞ 정보공유 대폭 확대

- 절충교역 대상(예정)사업 정보 확대
- 절충교역 디브리핑 제도 운영
- 절충교역 성공사례 공유 및 노하우집 발간
- 국외업체 해외구매 담당자 연락처 공유

## 3. 향후 추진 일정



- 방위사업법 개정 (2020년 예정)
  - 산업협력으로 명칭 변경
-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법 개정 후 추진)
  - 산업협력 쿼터제 도입
- 절충교역 지침 개정 (2019. 12월 예정)

### 절충교역 제도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E-mail : [offsetconsulting@korea.kr](mailto:offsetconsulting@korea.kr)
- ▶ 전화번호 : 02-2079-6341 ~ 6359 로 문의바랍니다.